

## 조서 이의 신청서

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(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, 박홍우 부장판사)  
원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 
(휴대폰:010-5590-8913)

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

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변론기일조서(5월 26일) 관련하여,  
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64조(조서에 대한 이의)에 따라,  
변론조서와 실제 변론에 차이 등의 사유로 이의 신청합니다.

### 이의 사항들

자세한 것은 5월 26일 자 실제변론(입증자료1)과 변론조서(입증자료2)를 비  
교 참조.

#### 1. 변론 조서에 누락된 중요 내용

가. 양승태 대법관 판결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는 변론 진술  
(입증자료3)

“(지난 3월 9일)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은 사립학교법 해석을 변경한 것  
으로,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0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 
위법판례인 것입니다.

양승태 대법관은 그 판결에서 교수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
는 법리를 주장하였는데, 그 법리는 판결이유가 아닌 방론으로서, 선  
례구속력이 있는 영미계에서도 따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우리는  
대륙계로서 더더욱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.”

#### 나. 피고 성대의 재판지연 추가증거

“먼저 피고 대리인은 소송위임을 지난 2005년 10월 26일 받았습니다

